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42
----------	-------

발의연월일 : 2025. 6. 24.

발 의 자 : 윤종균 · 문진석 · 진선미
복기왕 · 전현희 · 소병훈
맹성규 · 홍기원 · 김주영
안태준 · 민홍철 · 윤호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임.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또한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공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 조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또한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4조제8항)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이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9항).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동 복구 등의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4조제1항제8호, 제56조제3항제7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안전점검을”을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안전점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면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등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면 외관조사 및 지표투과레이더 등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지하의 공동 유무 등을 조사하는 안전점검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및 제거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제3항제7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u>안전점검을</u>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정기적으로 실시하고</u>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 ----- ----- <u>다음 각 호</u> <u>의 안전점검을</u> ----- ----- <u>실시하고</u> ----- -----.
<u><신 설></u>	1. <u>정기안전점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면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u>
<u><신 설></u>	2. <u>정밀안전점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등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면 외관조사 및 지표투과레이더 등 측정·</u>

② ~ 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지하의
공동 유무 등을 조사하는 안
전점검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통보받은 사항을 중
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결과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하시설
물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및
제거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
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
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조
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9. (생략) ② (생략) 제5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 17. (생략) ④ (생략)	제54조(벌칙)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 18. (현행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